

## 본 협회, 공정거래위원회 학술 용역사업 수행

### “미국·EU·독일·일본 등 선진국 경쟁법규 비교·분석”에 대한 학술연구 용역사업

본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11월 “미국·EU·독일·일본 등 선진국 경쟁법규 비교·분석” 용역을 수주받아 연세대 박길준 법대학장, 중앙대 서헌제 법대학장, 서강대 법학과 유진희 교수, 고려대 법학과 박노형 교수 및 본 협회 홍미경 조사부장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최종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진국인 미국·EU·독일·일본 등 선진국의 최신 경쟁정책 동향 및 법제화 추세 파악으로 우리 경쟁법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고 기업결합 등 관련 법규 발간을 통해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국·EU 등의 역외적용 움직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는 미국의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거래위원회법, EU의 로마조약, 이사회규칙, 합병심사규칙, 독일의 경쟁제한금지법, 부정경쟁방지법, 리베이트법, 경품법, 일본의 독점금지법 및 시행령,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과 불공정한 거래방법과 공동개발연구, 특허 노하우 라이선스 등에 관한 각종 지침과 고시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세계 경쟁법규의 선진국들이 대형합병과 국제적 기업결합에 대비하여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사후신고제도에서 사전신고제도로 전환하였으며 일정 매출액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역외적용을 인정하는 규정을 법제화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 역시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로의 전환과 일정 매출액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 역외적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법 심결사례 해설 및 평석(’95~’98)」에 대한 학술연구 용역사업

본 협회는 지난 6월 「공정거래법 심결사례 해설 및 평석(’95~’98)」에 대한 학술연구 사업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 ’95년부터 ’98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결했던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약관법의 사례 가운데 100건을 선정하여 알기 쉬운 공정거래법 심결해설 및 평석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학술연구에는 본 협회 이양순 회장, 전남대 법학과 신창선 교수, 연세대 법학과 신현윤 교수 및 안동대 법학과 이기종 교수가 참여하였다.

본 협회는 공정거래관련 유형별 위반사례 해설집을 발간함으로써 일반인 및 기업인들의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제고와 자율준수의식을 고취하게 되었으며, 기업체 당

당자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자들의 법운동에 있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판단기준과 법적 논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협회는 2000년 1월 중순경 연구의 내용을 수정하고 새로이 편집하여 업계에 보급할 계획이다.

### 「알기쉬운 공정거래제도 홍보만화」 발간에 대한 용역사업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공정거래법 준수 확산이 어려우며 이런 문제점은 일반국민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홍보만화 발간의 주요 목적은 일반국민들의 공정거래법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도 주로 일반 소비자들과 관련이 깊은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그리고 약관제도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규제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만화로 그렸다.

본 홍보만화의 발간으로 공정거래법관련 사항에 대한 사건처리 절차의 효율화와 국민 불편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배포 대상은 일반 국민들과 접촉이 빈번한 280여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과 금융기관 및 소비자단체이다.

공정거래제도 홍보만화 책자에 관한 문의로는 본 협회 조사부(☎ 775-8870~2)로 하시기 바랍니다.

## 협회 명칭 변경 및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안내

본 협회의 구 명칭(한국공정경쟁협회)이 협회의 기능이나 성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호칭하기가 어렵다는 여론에 따라 회원총회의 의결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99년 6월 11일부로 협회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공정거래협회"(The Korea Fair Trade Association)로 변경하였습니다. 더욱 새롭고 힘찬 출발을 다짐하겠습니다.

또한 본 협회는 '99년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본 협회 내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조·수리 및 건설위탁 등의 하도급분쟁사안에 대하여 보다 객관성있고 공정한 분쟁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제3차 조정회의 개최

본 협회 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제조 수리 및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신무성 위원장 및 위원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하도급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조정회의에 상정된 주요 분쟁사안과 그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조정성립(4건)

- 효림산업㈜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제조하도급분쟁 건  
- 조정안대로 하도급대금 1,540천원을 지급하고 조정수락
- 대성국토개발㈜의 부당감액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건설하도급분쟁 건.  
- 조정안대로 하도급대금 349,893천원 및 E/S정산금 33,000천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조정수락
- 현대정밀산업㈜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제조하도급분쟁 건  
- 조정안대로 하도급대금 4,125천원을 지급하고 조정수락
- 선산토건㈜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건설하도급분쟁 건.  
- 조정안대로 하도급대금 5,500천원 및 지연이자 215천원 지급하고 조정수락

### 무혐의(1건)

- 한국유리공업㈜의 어음할인료 미지급에 대한 제조하도급분쟁 건  
- 피신고인과 합의정산 후 재청구를 하고 있는 사안으로 신고인의 청구는 부당한 청구로서 이 건 청구는 기각(무혐의)함.

**조정불개시(1건)**

**피신고인 요건 결여**

- 당사자 미해당계약서 원사업자 오기
  - 세경산업(주)에 대한 건설하도급분쟁 건

**조정불성립(7건)**

**조사불응**

- 세경건설(주)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건설하도급분쟁 건
  - 신고인의 사건이첩 요구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이첩
- 삼목정공(주)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제조하도급분쟁 건
  - 피신고인의 조사불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이첩
- 영도건설산업(주)의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에 대한 건설하도급분쟁 건
  - 피신고인의 조사불응 및 신고인의 사건이첩 요구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이첩
- (주)대림건설의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에 대한 건설하도급분쟁 건
  - 신고인의 사건이첩 요구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이첩
- (주)신산에이전시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제조하도급분쟁 건
  - 피신고인의 조사불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이첩

**조정기일 경과**

- 장풍건설(주)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건설하도급분쟁 건(2건)
  - 하도급법 제12조4항에 기한 조정기일 내에 조정이 불성립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이첩

◆ 분쟁사안 접수 및 처리현황 ◆

1999년 12월 10일 현재

구 분	접 수 현 황			조 정				조 사	
	계	제조	건설	성립	불성립	요건미달	미해당	합의	진행
조정외뢰	17	2	15	12	1	1	-	-	3
직접접수	26	13	13	5	7	7	2	-	5
계	43	15	28	17	8	8	2	-	8

## '99 공정거래관련법규집 발간 안내

본 협회에서는 지난 6월 25일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등 각종 공정거래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한 「'99공정거래관련법규집」을 출간하였다.

'97년에 이어 두번째로 발간된 「'99공정거래관련법규집」은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및 약

관법과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관련법과 이에 관련된 고시 및 지침의 개정내용을 모두 수록하였다.

특히 「'99공정거래관련법규집」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지침이나 내부자료로만 활용되어 오던 과징금부과세부기준에관한고시와 각 분야별 표시·광고에 관한 지침, 산업자원부로부터 이관되어진 방문판매법과 할부판매법, 그리고 올 2월 5일에 공포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약칭 카르텔일괄정리법) 등을 수록함으로써 기업인은 물론 법령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의 활용도가 높도록 하였다.

동 공정거래법규집의 판매가는 25,000원이며, 수록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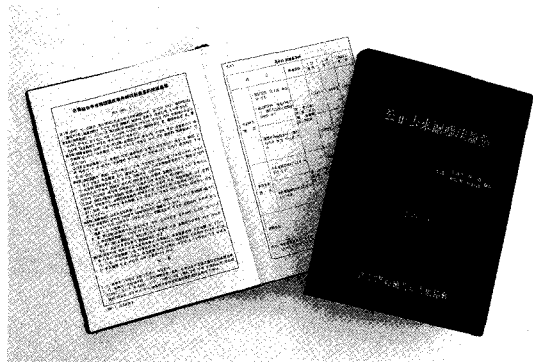
### 1. 공정거래법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 1)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
- 2) 기업결합의신고요령
- 3) 기업결합심사기준
- 4) 지주회사의범위에관한심사요령
- 5) 지주회사의설립전환의신고및지주회사의주식소유현황등보고에관한요령
- 6) 기업결합신고규정위반사건에대한과태료기

### 준

- 7) 공동행위및경쟁제한행위의인가신청요령
- 8) 입찰질서공정화에관한지침
- 9) 사업자단체활동지침
- 10) 대규모소매점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 11)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 12)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에관한지침
- 13)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있어서의불공정거



래행위의기준

- 14) 대규모 기업집단의불공정 거래행위예대한심사기준
- 15)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
- 16) 국제계약상의불공정 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
- 17) 국제계약심사요청요령
- 18) 공정 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 19) 법위반사실의공표에관한운영지침
- 20)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등의의한이해관계인등에대한경비지급규정
- 21) 경쟁정책자문위원회의실시및운영에관한규정
- 22)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 23) 체납가산금에대한가산금요율고시
- 24) 독점금지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위반행위의교발에관한공정 거래위원회의지침
- 25) 공정 거래위원회소송사건수임변호사보수규정

II. 하도급법

- 1. 하도급 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 2. 고시·지침 등
  - 1) 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지급시의할인율
  - 2) 제조위탁의대상어되는물품의범위고시
  - 3) 선금금등자연이자지급시의자연이자율고시
  - 4)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고시
  - 5) 하도급자문위원회의위촉및운영에관한규정
  - 6) 하도급 거래공정화지침
  - 7) 과징금부과기준

III. 약관규제법

-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 1)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위촉및운영에관한규정

IV. 표시·광고법

- 1.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 2. 고시·지침 등
  - 1) 표시·광고에관한공정 거래지침
  - 2) 주택광고에관한심사기준
  - 3) 환경관련표시·광고에관한공정 거래지침
  - 4) 상가등의분양및임대광고에관한공정 거래지침
  - 5) 은행등의금융상품표시·광고에관한공정 거래지침
  - 6) 보험상품표시·광고에관한공정 거래지침
  - 7) 수상·인증등의표시·광고에관한공정 거래지침
  - 8)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실시및운영에관한규정
  - 9) 통신판매표시·광고에관한공정 거래지침
  - 10) 주유소등석유판매업에있어서의공급자표시에관한불공정 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V.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VI. 일부 거래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VII.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VIII. 공정 거래위원회의운영

- 1. 공정 거래위원회직제
- 2. 공정 거래위원회직제시행규칙
- 3. 공정 거래위원회위원전결규정
- 4. 지방사무소업무처리지침

※ '99공정거래관련법규집'에 대한 문의 및 구입신청은 본 협회 조사부(☎ 775-8870~2)로 하시기 바랍니다.